

문화콘텐츠 수출업자의 조세전략 사례연구*

김상희** · 조형태*** · 최기호****

<요 약>

문화콘텐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콘텐츠 수출업자와 과세관청 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잦아졌다. 콘텐츠 수출은 수출업자가 해외로부터 콘텐츠 대가를 일괄 수령하여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는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이 분쟁의 대상이었다.

대법 2014두 5613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같은 조세 쟁송의 원인은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국외에서 수령한 총 대가에서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인데, 2013년 초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를 개정하여 국외원천소득의 개념을 소득 금액으로 정하였고, 그 결과 총수입금액 방식으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해 온 문화콘텐츠 수출업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콘텐츠의 퍼블리셔인 A사가 해당 세법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조세전략을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A사가 채택한 조세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하고 동 사례를 통해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A사는 2013년 말 인기 온라인 콘텐츠의 해외배급권을 자회사 B사에 이전하는 세무계획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A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890억의 세금을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과세 이연시킨 것으로 보이며, B사는 해외배급권을 감가상각함으로써 약 468억원의 세금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A사는 해외배급권 양도과정에서 법률 및 회계 자문비용 등의 비세금비용을 부담하였을 것이고, 추후 해당 거래와 관련한 세법적용의 불확실성 등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본 사례의 배경이 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외원천소득 범위를 국외에서 수령한 소득금액으로 정비하였기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원천지국의 과세방법에 대한 고려없이 정의하여 이중과세 조정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효과적인 세무계획, 외국납부세액공제, 현물출자, 국외원천소득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 기초한 논문입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공인회계사, bluesh5@naver.com, 주저자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cht1212@hongik.ac.kr, 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cgh@uos.ac.kr, 공동저자

I. 서 론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조 달러 규모에 달하며 2010년 이후 연평균 4.7%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산업도 510억 달러 규모로 세계 8위 수준이며, 수출액도 2012~2014년 기간 동안 연평균 7.3%씩 지속적으로 증가¹⁾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콘텐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콘텐츠 수출업자와 과세관청 간에 이중과세 조정문제,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분쟁²⁾이 잦아졌다.

콘텐츠 수출은 개발자로부터 퍼블리싱 권한을 위임받은 수출업자가 일괄적으로 해외유통사와 계약을 맺어 대가를 수령한 뒤 계약에 따라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는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국외에서 수령한 전체 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조세 쟁송의 대부분은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에서 수령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기획재정부가 2013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 내용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는 명확해졌다. 그 결과 퍼블리셔의 지위로 외국과 콘텐츠 판매 계약을 맺어 사용료 수익을 일괄적으로 수령하는 사업자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인기 온라인 콘텐츠의 퍼블리셔인 A사가 실시한 조세전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법률개정이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사는 2013년 12월 온라인 콘텐츠의 해외배급권을 자회사인 B사에 이전하여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비용을 제거하는 세무계획을 실시하였다. Scholes et al.(2008)에 따르면 효과적인 세무계획이란 모든 거래당사자들을 고려해서 계약적 관점에서 수립되고 암묵적 조세까지 포함한 모든 세금을 고려해야 하며 세금비용 뿐 아니라 비세금 비용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A사가 수행한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을 활용한 조세전략을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A사가 채택한 조세전략이 효과적인 세무계획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동 사례를 통해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례연구는 이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문화콘텐츠 사업의 구조,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방법 및 현물출자에 대해 개괄한다. 제Ⅲ장에서는 A사가 수행한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을 활용한 조세전략을 소개한다. 제Ⅳ장에서는 A사가 채택한 조세전략을 효과적인 세무계획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세금 측면과 비세금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A사가 채택 가능했던 대안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Ⅴ장에서는 해당 사례가

1) 김정덕,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2면.

2) 대표적으로 조심2014중1201(2015.06.30.), 대법2014두5613(2015.03.26.) 등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분쟁 사례를 들 수 있다.

시사해주는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Ⅱ. 제도 분석 및 선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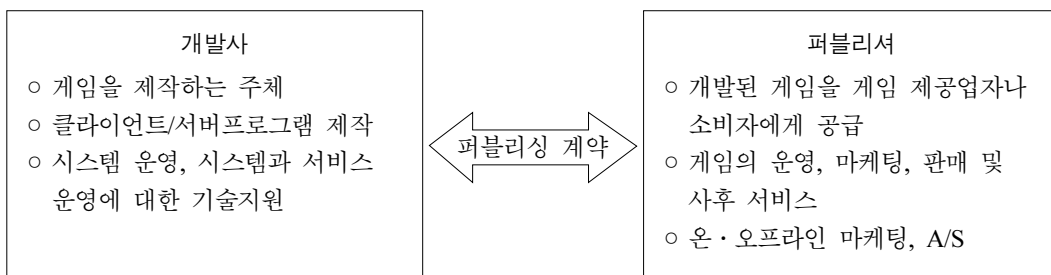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A사의 사례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사례와 관련이 있는 문화콘텐츠 중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의 구조,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방법, 현물출자에 대한 세법 규정 그리고 조세 전략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1. 문화콘텐츠 사업의 구조

문화콘텐츠 사업 중 온라인게임 사업에서는 다수의 이용자가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호스트 서버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즐기는 게임물을 말하며 게임을 제작하는 역할을 하는 개발사, 게임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획, 마케팅, 제작 등의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매 및 사후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퍼블리셔 등 가치 사슬별로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한다.³⁾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은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을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적절하게 공표하여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당사자인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역할을 요약⁴⁾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당사자 및 역할



자료 : 황태희.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 법률관계』, 39면.

- 3) 이상규, 『한중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계약 사례분석 : <미르의 전설2> 중국진출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6면
- 4) 황태희.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 법률관계』,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39-40면.

개발사는 게임을 제작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온라인 게임의 운영을 위하여 핵심적으로 필요한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램(Client/Server Program)을 제작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또한 게임 시스템, 스토리를 제작하고 그 게임의 브랜드, 로고, 심볼을 정하며, 서버 및 DB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시스템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퍼블리셔는 개발된 게임을 게임제공업자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획, 마케팅, 제작 등의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매 및 사후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구매·설치·운영, 서비스 운영, 고객지원, 웹페이지 제작·운영, Payment & Billing 구축·운영, 온·오프라인 마케팅, 게임 콘텐츠 및 홍보물 번역, 홍보, PC방 영업, 유료화, A/S 등의 역할을 한다.

2.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세제 분석

가.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의 일반 원칙

국제적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납세자에게 둘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동시에 주장되어, 과세권의 중복 내지는 경합이 발생한 상태⁵⁾를 말한다. 이러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원인⁶⁾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특정 납세자가 양국의 세법상 동시에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에 발생한다. 다음으로 거주지 과세기준과 원천지 과세기준 적용 방식이 충돌하여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원천에 대한 판정기준이 각국 간에 상이하여 서로 각국의 원천소득이라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과세기준 적용 방식의 충돌과 관련한 이중과세 문제는 일종의 국가 간의 과세권의 배분 문제로 연결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한다. 즉 각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통해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 국가(혹은 거주지 국가)의 과세권을 제한함으로써 거주지 국가(혹은 원천지 국가)의 과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⁷⁾한다. 하지만, 과세권이 양국에 모두 또는 제한적으로 주어져 양국이 모두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국내법과 조세조약에 자본수출중립성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자본수입중립성에

5) 안종석·구자은,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7면.

6) 오남교,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7면.

7) 오남교, 앞의 논문, 7면.

근거한 국외소득면제방식, 국가적 중립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 방식 등의 추가적인 이중과세 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제도

우리나라는 거주자에 대해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해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에게는 원천소득과세 방식을 채택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정되는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거주자로 판정되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또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지 세금을 면제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의 수와 금액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 현황(2011년~2015년)

(단위 : 개, 억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중소기업	599	842	665	890	626	873	591	752	671	630
일반기업	601	15,118	650	24,416	743	25,171	776	27,104	853	38,837
합 계	1,200	15,960	1,315	25,306	1,369	26,044	1,369	27,856	1,524	39,467

주 :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 국세통계연보(2012년~2016년)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혹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손금산입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대부분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직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둘째, 간주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국에서 이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셋째, 간접외국납부세액이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배당금과 관련

하여 현지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주는 금액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받지만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또한 국외원천소득이 국내에서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 공제한도액 산출세액에 법인세 과세표준 국외원천소득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만약 외국납부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 주요국의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제도⁸⁾

(1) 영국

영국의 경우에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해오다가 재정법(Finance Act)의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분배금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하였다. 영국에서의 국외소득면제방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영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영국의 조세를 한도로 적용하기에 국외원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능동적소득인지 수동적소득인지에 여부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국제 및 기타규정에 대한 영국세법(TIOPA : Taxation International and Other Provision Act) 2010 §42와 §44에서는 능동적소득(trade income)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관련되는 직·간접비를 차감한 순소득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비용은 국외원천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반면, 간접비용의 경우에는 직접비용에 비해 배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간접비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영국 국세청은 매뉴얼에서 합리적인 비용배부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간접비 배부 전에 계산된 소득비율, 임직원 수, 면적, 지분율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능동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을 배부하는 규정이 없고, 영국 국세청의 매뉴얼에도 능동적 소득이 아닌 이자나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은 국외에서 과세대상이 된 원천소득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간접비용을 배부하지 않고 있다.

8) 이 부분은 오남교(2013)의 논문 중 ‘제Ⅲ장 주요국의 입법례’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다.

(2) 미국

미국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일반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어 전세계 소득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이 중요한 부분이며, 미국세법에서는 각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정부가 과세하기 위해 계산된 과세소득이 자동적으로 미국세법 목적상 국외원천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세법에 맞게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한다. 즉 각 소득종류별로 미국세법의 입장에서 해당 수익을 결정한 후 해당 수익에 관련되는 비용을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 재무부규칙에서 기본적인 비용 배분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용들은 두 단계로 배부되며 먼저 관련되는 각 소득의 유형(class of gross income)별로 배부를 하고 규정상 필요한 경우에 각 수익 유형 내의 비용들을 법정그룹(statutory grouping)과 잔여그룹(residual grouping)으로 배분하게 된다. 비용의 배부는 각 소득유형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 사이의 실제적인 인과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재무부규칙에서는 구체적인 배부방법으로 판매량, 총매출, 매출원가, 사용자산, 인건비,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009년부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외원천배당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내국법인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외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전 배당금 총액의 95%만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국외원천배당소득면제방식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면 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한도는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금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목적상 계산된 과세표준이 아니라 일본세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6항에서는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들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동비용을 구분하여 배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원천소득이나 국외원천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직접 구분하여 해당 소득에 귀속시키고, 공동비용은 수입금액, 자산가액, 사용인의 수, 기타 기준 중에서 내국법인이 행하는 업무내용 및 비용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현물출자에 대한 세법 규정

현물출자⁹⁾란 법인의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상품과 같은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한다. 현물출자의 결과 피출자법인은 현물출자 자산을 취득한 뒤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며 출자자는 현물출자 자산을 납입하고 신주를 지급받게 된다. 상법에서는 현물출자의 성질을 대물변제, 매매, 주식과의 교환 등으로 보는 설¹⁰⁾도 있으나 세법¹¹⁾에서는 현물출자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인 양도로 보아 그 양도가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행 법인세법은 제47조의2를 통해, 현물 출자 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상시적인 과세특례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 법인세법을 개정¹²⁾하면서 법인세법으로 내용을 이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현물출자를 통하여 기존 법인에게 증자하는 방식 역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고, 출자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각각의 기업이 보유하던 부동산, 기술, 자금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¹³⁾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은 사업목적성이다.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은 사업계속성이다. 피출자법인은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세 번째 요건은 지분연속성이다.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해야 한다. 네 번째 요건은 분리가능성이다. 출자법인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

9) 네이버 두산백과 참조

10)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1판, 박영사, 2013, 223면.

1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12) 법률 제9267호(2008년 12월 26일)

13) 김광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09, 13~14면

에게 승계하여야한다.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출자법인은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또한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여 혜택을 취소한다.

4. 선행연구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으나, 국제조세 또는 출자구조의 변경과 같은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주영·이상신(2014)에서는 선박왕과 완구왕 사례를 들어 해당 사례의 세무계획을 평가하였는데, 세금 효과를 고려하여 조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세금 효과를 고려하여 세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납세자가 전세계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무리한 세무계획을 수행한 탓에 상당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거래의 세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패한 세무계획으로 평가하였다. 정운오·고종권(2007)에서는 D회사의 국제조세리스 거래를 분석하여 하나의 감가상각자산이 국제조세리스 거래를 통해 자산보유자와 투자자가 이중상각하게 됨에 따라 세금재정거래가 가능함을 보였다. 김예나·박주영·최기호(2015)는 기업의 승계를 위한 세무계획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당시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 뿐 아니라 지분을 이전한 후에 발생할수 있는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해야함을 보여주었다. 임동준(2016)은 물적분할 및 감가상각을 활용한 조세전략을 효과적인 세무계획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감가상각을 활용한 조세전략은 세금 절감을 위해 회계기준에 위배를 무릅쓰고 공격적으로 세무계획을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한 세무계획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김갑순, 정운오, 전병욱(2010)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세금비용만을 고려할 때 해당 세무계획은 성공적이었으나, 사회적 비난, 기업이미지 실추, 경영진 퇴진 등 다양한 비세금비용을 고려할 경우 해당 세무계획은 실패한 세무계획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유재봉(2013)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한 미국 Compaq사의 조세회피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사례에 대한 미국 과세당국의 대응 노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암묵적 조세(Implicit

Tax)가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창희(2014)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 규정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현행 국별한도방식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혼성단체에 대한 특칭이 불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오남교(2014)는 현행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의 명확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황규영, 김유라(2013)는 2011년 말 개정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고찰하였는데, 특히 자본투자의 중립성 확보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본취지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법인세법 개정에 대응하여 세후이익 극대화를 위해 수행한 한 기업의 조세전략을 세무계획 관점에서 분석하고 채택 가능했던 대안들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기존연구는 해당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비하여, 본 연구는 실제 사례를 통해 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인한 세무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무계획의 분석 및 그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III. 사례 연구를 통한 분석

1. 세무계획의 개요 및 세금효과 분석

본 사례의 대상회사인 A사는 2008년에 온라인게임의 개발사인 B사 지분 100%를 인수한 뒤, 해외게임유통사인 C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중국시장에 진출하였다. 이후 해당 온라인게임은 중국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2012년 기준으로 연간 해외 매출이 5,380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콘텐츠 수출은 개발자로부터 퍼블리싱 권한을 위임받은 수출업자가 일괄적으로 해외유통사와 계약을 맺어 대가를 수령한 뒤 계약에 따라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A사는 C사로부터 지급받은 해외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A사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부담 공제받았다는 사유로 약 257억원의 세금을 추정¹⁴⁾당했다. 또한 다음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¹⁵⁾이 신설되어 그동안 납세

14)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국세청 보도자료 2013.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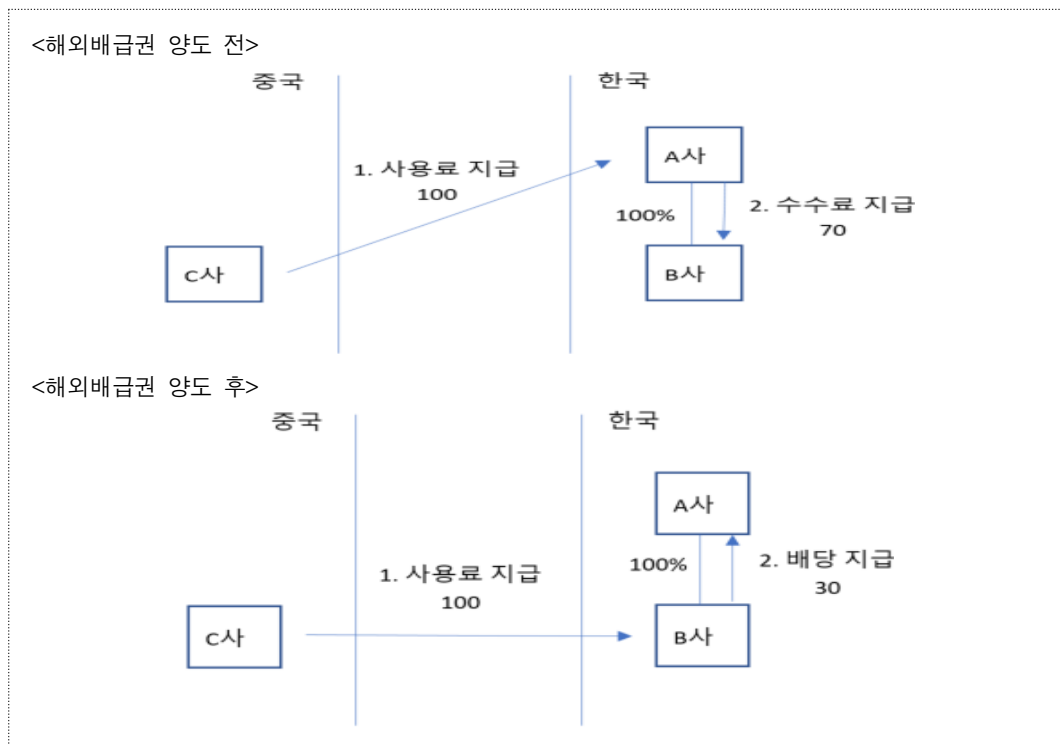
15) 대통령령 제24357호(2013년 2월 15일 신설)

자가 국외원천소득을 글귀 그대로 해석하여 ‘국외에 원천을 두고 있는 소득’으로 보고 ‘국외에서 수령한 전체 금액’이라 판단할 수도 있던 국외원천소득의 개념이 ‘국외에서 수령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해졌다.

2012년 실시된 세무조사 및 2013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A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에 사용해 온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해왔던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사용료 총액에 대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약 34% 정도¹⁶⁾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해소하고자 A사는 중국 소재 게임유통회사인 C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던 인기 온라인 게임의 해외 사용료수익에 대한 권리인 해외배급권을 100% 자회사인 개발사 B사에 양도하는 세무계획을 수행하였다.

〈그림 2〉 A사의 세무계획 수행 전·후의 사용료수익 거래 구조



주 : 국세청 보도자료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배분비율은 7 : 3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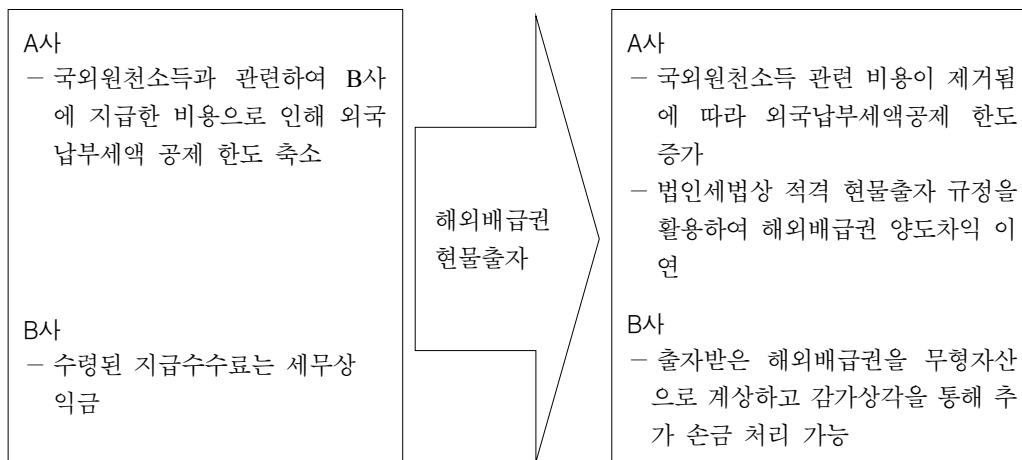
16) 본 논문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 개정 이후 공제받지 못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의 34%정도로 추정된다(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외국에서 납부한 세액=189/557=34%).

A사의 해외 사용료 수익 귀속처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세금효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증가 효과와 해외배급권 양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효과로 나눌 수 있다.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르면 A사가 중국으로부터 수령하여 B사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라 A사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며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A사가 해외배급권을 B사에게 양도하면 중국으로부터 받는 해외사용료수익 전체를 B사가 인식하게 된다. B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중국 매출 관련 A사의 기여 분을 A사에게 지급수수료가 아닌 배당 등의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은 존재하지 않아 해외사용료수익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A사는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하여 무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세무상 익금으로 과세되나, 법인세법상 적격한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주식의 처분시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반면에 B사는 A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해외배급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감가상각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림 3〉 A사의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한 세금효과



즉 <그림 3>과 같이 A사 그룹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A사가 해외배급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B사에 지급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A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중국에서 납부한 사용료수익에 대한 세금 전체를 공제받게 되는 세금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A사의 해외배급권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 이연요건을 충족하여 과세가 이연되고, B사의 현물출자를 통해 양도 받은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2. 감사보고서를 통한 세금효과의 확인 및 세무계획에 대한 평가

양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해외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을 활용한 세무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효과의 금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증대에 따른 세금 효과

먼저 외국납부세액 공제 증대에 따른 세금효과의 원천은 A사가 사용료수익의 귀속처를 변경하여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늘어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세무계획 실시 전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증감액을 비교하여 세금 절감액을 추정할 수 있다.

A사가 해외사용료수익을 인식하던 2013년도까지는 A사가 개발자 기여 분만큼 B사에게 지급 수수료로 배분했었기에 이를 역산하여 해외사용료수익 총액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A사가 해외사용료수익을 이전한 2014년도부터는 B사의 감사보고서 영업부문 정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령한 해외사용료수익 총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해외게임유통사로부터 수령하는 총 사용료수익(2012년~2015년)

(단위 : 억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용료수익 총액	5,366	5,441	5,571	5,936

자료 : A사의 감사보고서(2012년~201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사의 감사보고서(2014년~2015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만약 A사가 사용료수익을 B사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2014년도도 예전처럼 A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다. 아래 <표 3>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경우를 가정하여 2014년도 A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하고, 실제로 사용료수익을 이전하여 B사에서 계산한 2014년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그 차이를 구하면 세무계획으로 인한 세금 절감액¹⁷⁾일 것이며 이는 약 189억 정도로 추정된다.

17) A사가 해외배급권 양도를 통해 누리는 세금효과의 원천은 사용료수익의 귀속처를 변경하여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늘어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증감액이 세금 절감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 A사의 사용료수익 이전을 통한 세금 효과 추정치(2014년)

(단위 : 억 원)

구 분	사용료수익 이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수익 이전을 실시한 경우
사용료수익 총액(①)	5,571	5,571
중국 납부 세금(②=①×10%*)	557	557
국외원천소득(③**)	1,671	5,57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④=③×22%***)	368	1,226
외국납부세액공제액(⑤=Min(②,④))	368	557
공제 받지 못하는 외국납부세액(⑥=②-⑤)	189	0

주 : * 한국과 중국간의 조세조약상 사용료 수익의 제한세율은 사용료 총액의 10%임

** 개정세법상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하는 바 사용료수익 이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570\text{억} - 5,570\text{억} \times 70\% (7 : 3 \text{ 배분비율 반영}) = 1,671\text{억}$ 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 국외원천소득의 22%(국내 법인세율)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로 가정

자료 : A사의 감사보고서(2014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음으로 세무계획을 통해 양사의 외국납부세액이 변화가 있었는지 감사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4>에서도 나타나듯이 해외배급권을 양도한 A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사용료수익을 이전하지 않았던 2013년까지는 외국납부세액을 충분히 공제받지 못해 실무담세율¹⁸⁾이 증가(39% → 50%)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용료수익을 이전한 2014년 이후 그 추세가 감소(50% → 38%)하여 2015년에는 27.44%로 법인세율과 유사한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용료수익 이전을 하기 이전에는 충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실무담세율이 증가하다가, 사용료수익 이전 이후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 A사는 B사로부터 배당금 수익을 지급받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3년에는 무형자산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지분율이 100%라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100% 적용받고, 현물출자 과세이연을 통해 무형자산처분이익도 과세 이연되었기에 해당 거래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를 제외한 조정 세전이익에 대한 실무담 세율로 비교하였다.

〈표 4〉 A사의 법인세 부담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2012년~2015년)

(단위 : 억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 (①)	11,170	12,522	7,395	8,222
법인세차감전순이익(②)	2,725	7,789	4,280	5,564
배당수익(③)	—	3,779	3,200	4,230
무형자산처분이익(④)	—	2,153	—	—
조정 세전이익(⑤=②-③-④)*	2,725	1,857	1,080	1,334
외국납부세액(⑥)	795	805	160	미기재**
국내납부세액 (⑦)	259	115	248	
법인세부담액 (⑧=⑥+⑦)	1,054	920	408	366
조정 실부담세율 (⑨=⑧/⑤)	38.68%	49.54%	37.78%	27.44%

주 : * A사는 B사로부터 배당금 수익을 지급받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3년에는 무형자산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지분율이 100%라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100% 적용받고, 현물출자 과세이연을 통해 무형자산처분이익도 과세 이연되었기에 해당 거래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를 제외한 조정 세전이익에 대한 실부담 세율로 비교하였다.

**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않았다.

자료 : A사의 감사보고서(2012년~2015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한 해외배급권을 양도받은 B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사는 사용료수익을 이전한 2014년에 외국납부세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사용료수익 이전을 통해 C사로부터 수령한 사용료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추정¹⁹⁾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B사의 실부담세율인 25.50%가 이론적 부담세율인 24.2%(지방소득세 포함)와 유사하며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이 524억임²⁰⁾을 볼 때 B사는 중국에서 수령한 사용료수익 총액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 받았음²¹⁾을 알 수 있다.

19) B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사의 2013년 중국매출이 전체매출의 2%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에는 88%로 급증한다.

20) B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외국납부세액 524억은 감사보고서 영업부문에서 추정된 5,570억이 전부가 사용료수익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인 557억(=5,571억×10%)과 5%정도 차이난다.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점의 환율과 수익인식 시점의 환율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1) B사의 매출의 90%가 해외사용료수익이고 다른 세액공제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볼 때 공제받지 못하는 외국납부세액이 존재하였다면 실부담세율은 이론적인 실부담 세율인 24.2%와 비슷하지 않고 훨씬 높았을 것이다.

〈표 5〉 B사의 법인세 부담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2012년~2015년)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①)	4,360	4,500	6,351	6,774
제 비용(②)	363	506	1,182	1,297
법인세차감전순이익(③=②-①)	3,997	3,994	5,169	5,477
외국납부세액(④)	미기재	2	524	미기재
국내납부세액(⑤)		929	794	
법인세부담액(⑥=④+⑤)	948	931	1,318	689
실부담세율(⑦=⑥/③)	23.72%	23.31%	25.50%	12.58%

출처 : B사의 감사보고서(2012년~2015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해외배급권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효과

다음으로 해외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을 활용한 세무계획의 또다른 세금효과인 해외배급권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효과를 양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사의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사는 현물출자 받은 해외배급권을 약 2,125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30개월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외배급권을 감가상각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효과는 연간 187²²⁾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A사가 실시한 해외배급권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과세이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상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기에 ① 사업목적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자법인 A사는 피출자법인인 B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던 지배주주였으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② 지분연속성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출자법인 B사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문인 해외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기에 ③ 사업계속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사가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은 해외사업부문으로써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며 출자한 자산 또한 무형자산으로서 ④ 분리가능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A사가 해외배급권을 현물출자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3년 A사 감사보고서 주석상의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주석을

22) 850억원(=2,125억원/30개월×12개월, 해외배급권의 연간 상각액)×22%=187억원

재구성하면 <표 6>과 같다.

<표 6> A사의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내역(2013년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①)	7,789
적용세율(24.2%)에 따른 법인세비용(②=①×24.2%)	1,885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③)	(915)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은 일시적차이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④)	(319)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⑤)	436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⑥)	32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⑦)	(39)
기타*(⑧)	182
조정사항 소계(⑨=③+④+⑤+⑥+⑦+⑧)	(623)
법인세비용(⑩=②+⑨)	1,262
이연법인세 증가(⑪)	342
당기법인세 부담액(⑫=⑩-⑪)	920

주 : * 단계적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 및 기타 등 주석 상 나머지 항목을 정리하였다.

자료 : A사의 감사보고서(201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만약 A사가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였다면, 해외배급권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을 것이고 해당 일시적 차이는 A사가 B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 조정되기에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한다.

그러나 K-IFRS²³⁾는 예외적으로 지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여 해외배급권의 대가로 수령한 지배회사주식의 처분시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사는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사항은 <표 6>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 6>에서 보듯이 A사는 2013년도 귀속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일시적 차이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였고, 이는 약 319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A사의 감사보고서 상에 해외 배급권 현물 출자로 증가한 지배기업주식과 관련한 이연법인세 부채 미인식액이 존재하고 A사가 해당 효과를 반영하여 2013년도 귀속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하였음을 고려할 때 A사가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였다고 추정할

23) K-IFRS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수 있다.

다. 총 세금 효과

B사와 A사의 2014년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수치를 가지고 추정한 사용료수익 이전 세무계획의 총 세금효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증가로 인한 연간 세금절감액 189억과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한 연간 감가상각비 효과 187억의 합인 376억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용료수익이 10년²⁴⁾간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간의 총 세금 효과는 약 2,358억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 A사의 사용료수익 이전을 통한 연도별 세금효과(2014년~2023년)*

(단위 : 억원)

	2014~2016년 (감가상각기간)	2017~2023년 (상각완료이후)	누계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증대 효과	189	189	1,890
무형자산 감가상각 효과	187**	—	468
연도별 총 세금 효과	376	189	2,358

주 : * 2014년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수치를 가지고 추정하였으며 퍼블리싱 계약기간 연장을 근거로 연평균 사용료수익이 10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함(현재가치 평가는 생략하였음).

** B사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배급권을 30개월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에, B사가 인식하는 연간 감가상각비는 850억, 850억, 425억이다.

IV. 효과적인 세무계획 관점에서의 해석 및 대안 분석

1.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의의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세금최소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즉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단순히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세후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세금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Scholes et al.(2008)에 따르면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한다.²⁵⁾

24) 2015년 B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사와 C사는 해당 문화콘텐츠의 중국내 퍼블리싱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회사는 최소 10년간 사용료수익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25) Scholes, M. S., M. A. Wolfson, M. Erickson, E. L. Maydew, T. Shevli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Fourth Edition)*,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2008, pp.2-3.

가. 모든 거래당사자에 대한 고려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거래 당사자(all parties to the transaction)에 대한 세무효과를 고려해야하며, 이는 세무계획을 세울 때 일방적이 아닌 다각적 접근(multilateral)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모든 세금에 대한 고려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명시적인 세금(explicit taxes) 뿐만 아니라 세무상 유리한 방안의 선택으로 인한 세전수익률의 감소분인 암묵적 조세(implicit taxes)까지 고려해야 잘못된 의사결정을 피할 수 있다.

다. 모든 비용에 대한 고려

세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금이 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 가운데 단지 하나임을 인식하고 세금비용을 포함한 모든 발생 가능한 비용(all costs)을 고려해야 한다. 즉 세금비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무계획에 수반되는 세금비용 외의 모든 관련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2. 해외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을 활용한 세무계획을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면에서의 검토

가. 모든 거래당사자에 대한 고려

중국 사용료수익을 이전하는 세무계획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는 B사와 A사 그리고 중국의 게임유통회사인 C사이다. 중국의 게임유통회사인 C사는 해외배급권이 이전됨에 따라 지급의 주체만 달라질 뿐 경제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A사와 B사의 사용료수익 이전 전후의 부담세액을 살펴보면 해당 세무계획이 모든 거래당사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A사는 해외배급권을 이전함으로써 해외사용료수익을 인식하지 않게 되어 중국에 납부하던 사용료수익 총액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해외배급권 이전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현물출자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이연되었다. 이처럼 A사는 해외배급권을 이전함으로써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B사는 해외배급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사용료수익 전액을 수령하게 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중국에서 부담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충분하여 전액 중국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받게 되었다. 또한 A사로부터 해외배급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이를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여 세금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만약 A사가 B사를 100%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면 B사의 세부담이 늘어나기에 해당 세무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A사가 B사를 100% 지배하고 있기에 둘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세부담을 고려하면 해외배급권 이전은 세금 절감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A사는 거래구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모든 거래당사자에 귀속되는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B사와 A사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모든 세금에 대한 고려

A사가 중국 사용료수익을 이전을 통해 소득의 귀속자를 변경하는 세무계획을 채택했다라도 세전수익률이 감소하여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으로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중국 매출을 해외게임유통회사인 C사와 나누는 효율이 A사가 수령하는 경우와 B사가 수령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B사와 A사의 100% 자회사로 양 회사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며, 해당 세무계획은 C사 입장에서는 지급처만 달라지는 것이기에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 계약을 사유로 중국 매출을 C사와 나누는 효율이 재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결국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 모든 비용에 대한 고려

A사는 해외 사용료수익 귀속처를 변경하는 세무계획을 통해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2014년에 약 376억원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나 다음과 같은 비세금비용 또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금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게임유통회사인 C사와 해외 사용료수익의 귀속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법률비용을 부담하였을 것이고, 해외배급권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B사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혹은 법무법인의 자문비용과 해외배급권 평가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무계획을 통해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점(박주영·전병욱(2012) 등)을 고려하면 A사는 세법적용의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위험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해외배급권 양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사용료 수익 귀속 변경 거래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수관계자인 A사가 B사에게 양도한 해외배급권의 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세금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A사는 세금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세무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및 회계 자문비용과 세법적용의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위험

등 상당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했고, 이러한 비세금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 A사의 해외배급권 이전을 통한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하는 세무계획을 평가하면 연간 376억을 절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세무계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거래당사자들의 채택가능한 대안의 분석

해당 사례에서 외국납부세액한도가 줄어든 이유는 ‘국내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비용’이 애초 국외에서 국외원천소득 과세 시점에 필요경비 공제 없이 전액에 대하여 세금 부담하였던 반면에,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비용’이 차감되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과세 시점에 양자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A사는 사용료수익의 귀속처를 변경하는 전략을 택하여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률 및 회계 자문비용과 세법적용의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위험과 같은 비조세비용을 부담하였다. 이 절에서는 A사가 채택 가능했던 다른 대안을 살펴보고 A사가 해외배급권 양도를 활용한 세무계획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하기로 한다.

가. 대안1 : 사용료수익을 각자 받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은 A사가 B사에 지급한 개발사 기여 분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에 이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퍼블리셔인 A사와 개발사인 B사가 C사로부터 사용료수익을 각각 수령함으로써 B사의 수익도 국외원천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한다면, 사용료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증대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경우 퍼블리셔와 개발사 모두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이 제거되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증가되나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한 세금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나. 대안2 : 국내에 자회사를 만드는 경우

또한 B사와 A사가 국내에 퍼블리셔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자회사를 만들어 해외배급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 뒤 자회사를 통해 해외사용료수익을 수취하고 이를 각각 배당으로 수령함으로써 소득의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자회사는 배당의 형태로 기여 분을 지급하기에 해외유통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용료수익과 관련한 국외원천소득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A사가 실시한 세무계획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회사에서 다른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한 감가상각 세금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 대안3 : B사가 수령하여 A사에게 사용료수익의 형태로 지급

A사가 실행한 조세전략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사인 B사가 전체 사용료수익을 수령한 뒤 퍼블리셔의 기여 분만큼 사용료수익의 형태로 A사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 할 것이다. 물론 이때 퍼블리셔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수익은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으로 적용되어 개발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배분비율이 7:3임을 고려할 때, 개발사가 퍼블리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으로 제외하더라도 개발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충분할 것이며 결국 세무계획1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A가 해외배급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사용료수익의 일부(30%)를 가져가므로 해외배급권의 양도로 인한 세금효과는 누리기 힘들 것이다.

A사가 채택 가능했던 대안 1, 2, 3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한 세금효과까지 고려하면 A사가 선택한 세무계획과 대안 2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에 있어 단순히 세금문제만 고려하여 별도의 법적 실체인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A사가 채택한 해외배급권 양도를 활용한 세무계획은 채택 가능했던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응하여 A사의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무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무계획은 A사가 B사를 100% 지배하고 있었다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현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V. 현행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당 장에서는 A사의 조세전략 사례가 시사해주는 현행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동일한 경제적 실질 하에 다른 세 부담 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A사가 해외배급권 현물출자를 통해 B사로 사용료수익을 이전하는 세무계획을 실행한 배경에는 2013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외원천소득의 범위가 ‘국외에서 수령한 전체 금액’이 아니라 ‘국외에서 수령한 소득 금액’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것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A사는 해외배급권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세무계획을 실시하여 사용료수익을 자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증가된 세 부담을 해소하였다. 또한 A사는 해외배급권 이전 과정에서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규정을 적

용받음으로써 추가적인 세금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A사가 이러한 세무계획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A사가 B사를 100% 지배하고 있었다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추가적인 세 부담²⁶⁾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퍼블리셔는 해외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사용료수익 1,000을 수령하여 이를 지급수수료의 형태로 개발사에게 700만큼 지급하며, 원천지국인 중국의 세율은 10%이고 국내 세율은 22%로 가정한다. 이와 별개로 퍼블리셔의 국내원천소득은 1,000이 존재하고 퍼블리셔는 개발사를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법인세법에 개정전에 A사의 방식(Case 1),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방식(Case 2), A사의 세무계획과 동일하고, B사가 A사에 배당으로 234²⁷⁾를 지급하는 방식(Case 3), 개발자와 퍼블리셔가 중국으로부터 사용료수익을 직접 각자 받는 방식(Case 4)의 경우 퍼블리셔와 개발자가 국내외로 부담하는 세금 및 현금흐름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각 Case별 부담세액 및 현금유입액 요약

구 분	Case1		Case2		Case3		Case4	
귀속주체 (배분비율)	퍼블리셔 (30%)	개발사 (70%)	퍼블리셔 (30%)	개발사 (70%)	퍼블리셔 (0%)	개발사 (100%)	퍼블리셔 (30%)	개발사 (70%)
세전 현금유입액*	1,300	700	1,300	700	1,000	1,000	1,300	700
중국납부세금	100	—	100	—	—	100	30	70
한국납부세금	186**	154	220***	154	220****	120	256*****	84
세후 현금유입액	1,014	546	980	546	1,014	546	1,014	546

주 : * 국내원천소득 1,000+국외원천소득 300(=1,000-700)=1,300. Case 3의 경우 개발사가 중국으로부터 소득을 직접 수취하고, 배당으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바, 국외원천소득을 전부 수취하는 것으로 계산함

** (국내원천소득 1,000+국외원천소득 300)×22%-외국납부세액공제 Min[100, 1,000(해외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총액)×22%]=186

*** (국내원천소득 1,000+국외원천소득 300)×22%-외국납부세액공제 Min[100, 300(개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국외원천소득)×22%]=220

**** (국내원천소득 1,000+배당수익 234-수입배당금의 불산입 234)×22%=220

***** (국내원천소득 1,000+국외원천소득 300)×22%-외국납부세액공제 Min[30, 300(해외 게임유통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국외원천소득)×22%]=256

26) 2014.06.11.자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수출업자들은 해당 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7-8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 B사가 다른 case 와 동일하게 세후현금흐름을 갖도록 234만큼 A사에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Case1>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개정 전에 A사가 해왔던 방식으로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먼저 퍼블리셔는 중국에서 사용료 총액 1,000에 대한 세금인 100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함으로써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전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어 186의 국내 세금을 납부하여 총 세후현금흐름으로 $1,014(=1,300-100-186)$ 을 수취한다. 반면에 개발사는 지급받은 수수료 700에 대해 국내 세율(22%)로 과세되어 154를 국내 세금으로 납부하고, $546(=700-154)$ 를 세후 현금흐름으로 수취한다.

<Case2> 개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개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상황이다. 퍼블리셔는 중국에서 사용료 총액 1,00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개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함으로써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66(=(1000-700) \times 22\%)$ 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220을 국내세금으로 납부하고, $980(=1,300-100-220)$ 의 세후현금흐름을 수취한다. 반면에 개발사는 지급받은 수수료 700에 대해 국내 세율(22%)로 과세되어 154를 국내 세금으로 납부하고, $546(=700-154)$ 를 세후 현금흐름으로 수취한다.

<Case3> 개발사가 사용료수익을 인식하고 퍼블리셔 몫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발사가 사용료수익 전체를 수령하고 퍼블리셔의 몫으로 234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개발사는 중국에서 사용료 총액 1,00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퍼블리셔에게 사용료수익이 아닌 배당의 형태로 기여 분을 지급하기에 국외원천소득 관련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100을 전부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발사는 $120(=1,000 \times 22\% - 100)$ 을 국내세금으로 납부하고, 배당을 제외하면 $546(=1,000-100-120-234)$ 의 세후현금흐름을 수취한다. 반면에 퍼블리셔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배당의 형태로 지급받은 234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별도의 국내원천소득 1,000에 대해 국내 세율로 과세되어 $220(=1,000 \times 22\%)$ 을 국내 세금으로 납부하고, $1,014(=1,000+234-220)$ 의 세후현금흐름을 얻는다.

<Case 4> 개발자와 퍼블리셔가 자신의 몫을 각각 수령하는 경우

개발자와 퍼블리셔가 해외게임유통회사로부터 각자의 기여분에 대해 각각 수령하는 상황이다. 퍼블리셔와 개발사는 해외게임유통회사로부터 수취한 사용료수익에 대해 중국에서 각자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수취한 사용료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계산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원천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소득에 다른 필요경비가 없다면, 퍼블리셔는 $256(=1,300 \times 22\% - 30)$ 의 국내세금을 납부하고, $1,014(=1,300 - 30 - 256)$ 의 세후현금흐름을 수취한다. 같은 방법으로 개발사는 $84(=700 \times 22\% - 70)$ 의 국내세금을 납부하여 $546(=700 - 70 - 84)$ 의 세후현금흐름을 벌어들인다.

<표 8>을 살펴보면 원천지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은 1,000이고,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납부하는 총 세금은 사용료 수익 1,000에 중국 세율 10%를 곱한 100으로 각각의 경우 모두 동일하다. 반면에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납부하는 총 세금은 국내원천소득을 국내 세율 22%로 과세하고 국외원천소득도 국내 세율 22%로 과세한 뒤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되는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에서 수령한 소득금액’으로 보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 때문에 <Case 2>의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총 부담세액이 34만큼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소득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국외원천소득 범위 산정

만약 한국이 완전세액공제방식(full credit)을 채택하고 있다면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그대로 공제해줄 것이기 때문에 한도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완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일반세액공제방식(ordinary credit)을 채택하여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국외원천소득도 원천지국이 아닌 거주지국 입장²⁸⁾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A사가 중국에서 사용료수익 총액에 대하여 세금부담을 하였더라도 원천지국인 중국 입장에서 국외원천소득을 산정²⁹⁾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을 산정³⁰⁾해야 하며 결국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외에서 수령한 전체 금액’이 아니라 관련 비용을 차감한 ‘국외에서 수령한 소득 금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퍼블리셔와 해외게임유통회사와 단독으로 계약하여 판권 사용료를 지급받고 이를 국내 개발자에게 분배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의 전형적인 거래 구조 하에서는 국내 개발자

28) 안종석·구자은, 앞의 책, 27면.

29) <Case 1>의 경우가 될 것이다.

30) <Case 2>의 경우가 될 것이다.

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표 9>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방법인 <Case 2>의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Case 3>, <Case 4>에 비해 34³¹⁾만큼 더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외사용료수익 중 개발자 기여 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세부담 증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법인세법은 국외원천소득을 일괄적으로 ‘국외에서 수령한 전체 금액에서 직·간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원천소득을 거주지국 입장에서 재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원천지국 입장에서의 사용료수익의 소득계산 방법(즉, 비용 차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과세대상 소득 산정)과 괴리가 있으며, 이 괴리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 때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이는 국제간 거래에 있어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목적의 달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자본수출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완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일반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여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하는 것은 자본수출중립성 측면에서의 조세중립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거주지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로 인해 특정산업에 대해서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아 효율 및 공평의 이념이 침해된다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을 일괄적으로 ‘국외에서 수령한 전체 금액에서 직·간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직·간접비용의 정의와 계산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해당 사례의 경우와 같은 사용료 수익이나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수동적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지급받은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는 방법³²⁾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표 9>와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31) <표 9>에 따르면 Case 2의 경우 한국과세관청은 개발자와 퍼블리셔로부터 374(=220+154)를 징수하나 Case3과 Case4에서는 340을 징수한다.

32) 오남교(2013), 앞의 책, 102면.

〈표 9〉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을 통한 국외원천소득 범위 구체화 (예시)

현행	개정안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⑭ (생략)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⑭ (생략)
⑮ —————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 (현행과 같음) ————— ————— —————,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다만 국외원천소득의 성격이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성격과 유사한 경우, 소득별 수입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한다.</u>
⑯ (생략)	⑯ (현행과 같음)

결론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는 본 논문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세되는 과세소득의 산정 방법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다를 경우 일관된 관점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방향은 동일한 경제적 소득에 대해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VI. 결 론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효과적인 세무 계획도 이러한 최적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세후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일 것이다. 특히 과세 당국에 의해 세법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기업은 그 상황에 맞추어 세후 수익을 극대화 하려고 행동하기 마련이다.

문화콘텐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였고, 결국 2013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외원천소득의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콘텐츠수출업자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문화콘텐츠 수출업자인 A사는 해당 법률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을 활용하여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세무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해외배급권 양도를 통한 세무계획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약 189억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2,125억이 발생하였으나, 적격현물출자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전액 과세이

연 시킬 수 있었고, 출자 받은 B사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매년 약 187억의 감가상각비가 증가되는 효과를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을 활용한 A사의 세무계획을 Scholes et. al(2008)의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A사가 실시한 세무계획을 세금 측면과 비세금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분석한 뒤, A사가 채택 가능했던 대안까지 고려했을 때도 효과적인 세무계획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A사는 해외 사용료수익 귀속처 변경을 활용한 조세전략을 실시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증가에 따른 세금효과로 189억, 추가적인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 부담 감소로 187억, 연간 총 376억의 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세금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세무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및 회계 자문비용과 세법적용의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위험 등 상당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했고, 이러한 비세금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 A사 세무계획을 평가하면 연간 376억을 절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세무계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A사가 채택한 해외배급권 양도를 활용한 세무계획은 채택 가능했던 다른 대안들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응하여 A사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세무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계획은 A사가 B사를 100% 지배하고 있었다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현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사례의 배경이 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국외원천소득 범위를 ‘국외에서 수령한 소득금액’으로 정비하였기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원천지국의 과세 방식의 고려 없이 산정하여 콘텐츠 수출산업처럼 원천지국 입장에서의 국외원천소득과 거주지국 입장에서의 국외원천소득 간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일어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법인세법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무상 효과와 문화콘텐츠 수출업자의 조세전략 사례로 보여주고,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갑순·정운오·전병욱. 2010.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공격적 세무계획가 세금외비용—삼성에 버랜드 전환사채 사례”.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187-214.
- 김광목. 20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 김예나·박주영·최기호. 2015. “기업의 승계를 위한 세무계획 유형 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1호 : 53-78.
- 김정덕. 2015.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박주영·전병욱. 2012. “한국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통한 론스타펀드Ⅳ의 세무계획”. 회계저널 제21권 제2호 : 35-59.
- 박주영·이상신. 2014. “거주지국 변경에 의한 조세회피 사례의 평가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선박와과 완구왕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 31-62.
- 안종석·구자은. 2006.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 오남교. 2014.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봉. 2013. “Lessons from the Compaq Computer Case and Their Implications for Tax Law of Korea”,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 2014.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1호 : 477-519.
- 이상규. 2004. “한중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계약 사례분석 : <미르의 전설2> 중국진출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송. 2013. “회사법강의”. 박영사.
- 임동준. 2016. “임대주택사업자의 조세전략 사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운오·고종권. 2007. “D회사의 국제조세리스 : 세금재정거래사례”, 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 79-104.
- 황규영·김유라. 201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고찰 및 개선”,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2호 : 149-173.
- 황태희. 2013.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 법률관계”.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 33-54.
- Scholes. 2008. M. S., M. A. Wolfson, M. Erickson, E. L. Maydew, T. Shevli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Fourth Edition)”.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 : //dart.fss.or.kr](http://dart.fss.or.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 : //txsi.hometax.go.kr/docs/main.jsp](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 네이버 백과사전([http : //terms.naver.com](http://terms.naver.com))

Study on the Tax Strategy of a Cultural Contents Publisher

Sang Hee Kim* · Hyeong Tae Cho** · Ki Ho Choi***

〈Abstract〉

As the export of cultural content has grown, the dispute of double taxation has arisen frequently between the cultural content exporters and the Taxation Office. The export of content primarily follows the way of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o a developer according to a contract between the developer and an exporter. As the exporters received the pay from the overseas in a lump sum, and then they distribute profits to the developers. In this case, there was the controversy about the range of foreign source income that can affect the foreign tax credit limit.

Most of these tax disputes have been judged that the foreign source income should be the deducted amount from the amount of income received outside to the relevant expens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vised the Corporate Tax Act Enforcement Decree in the early 2013 and modified the concept of foreign source income that was uncertain. As a result, cultural content exporters who have calculated the foreign source incomes with existing way are burdened by high taxation as the foreign tax credit limit has reduc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This case study analyzed the tax planning, adopted by a popular online game publisher A, to correspond with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 tax strategy and the issue of foreign tax credit payment regulation through the same case.

In the end of 2013, the company A conducted a tax strategy by transferring the overseas distribution rights to a subsidiary company B. The result of the tax strategy, the company reduced the tax approximately KRW 189 billion over the next ten years by increasing the foreign tax payment credit and it is analyzed that the company postponed the taxation of asset transfer gains due to the transfer of the overseas distribution rights. The transferor company B also had the benefit of the tax effects around KRW 46.8 billion by calculating depreciation expense of the transfer of overseas distribution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company A has incurred non-tax costs, such as legal and accounting consultation costs that arisen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of

*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CPA, bluesh5@naver.com,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professor, cht1212@hongik.ac.kr,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cgh@uos.ac.kr, Co-author

the transfer of overseas distribution rights. As a result of the tax strategy, the company bore the risk of trading related to the tax law enforcement between taxable profit and accounting profit. In conclusion, this strategy is meaningful that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has rearranged the range of the foreign source income clearly as the amount of income from overseas, but there seems to be an issue, there is no double taxation adjustment by redefining the range of the foreign source income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method of taxation.

〈Key words〉 effective tax strategy, foreign tax credit, in-kind contribution, foreign source income